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 관리

2018. 12. 6.



한국연구재단

목 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연구비 일반사항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제재조치 및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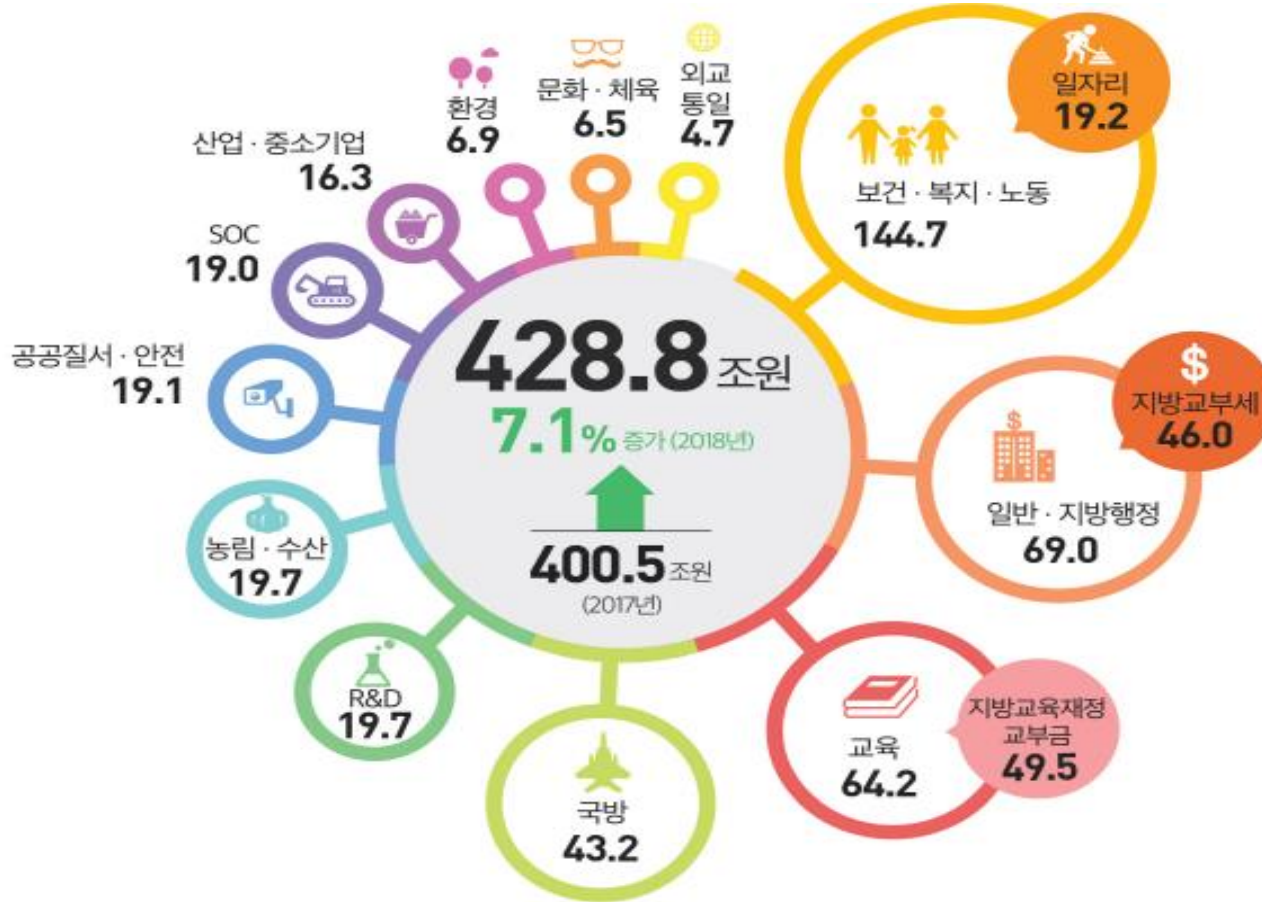
기타 참고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1 정부 총 예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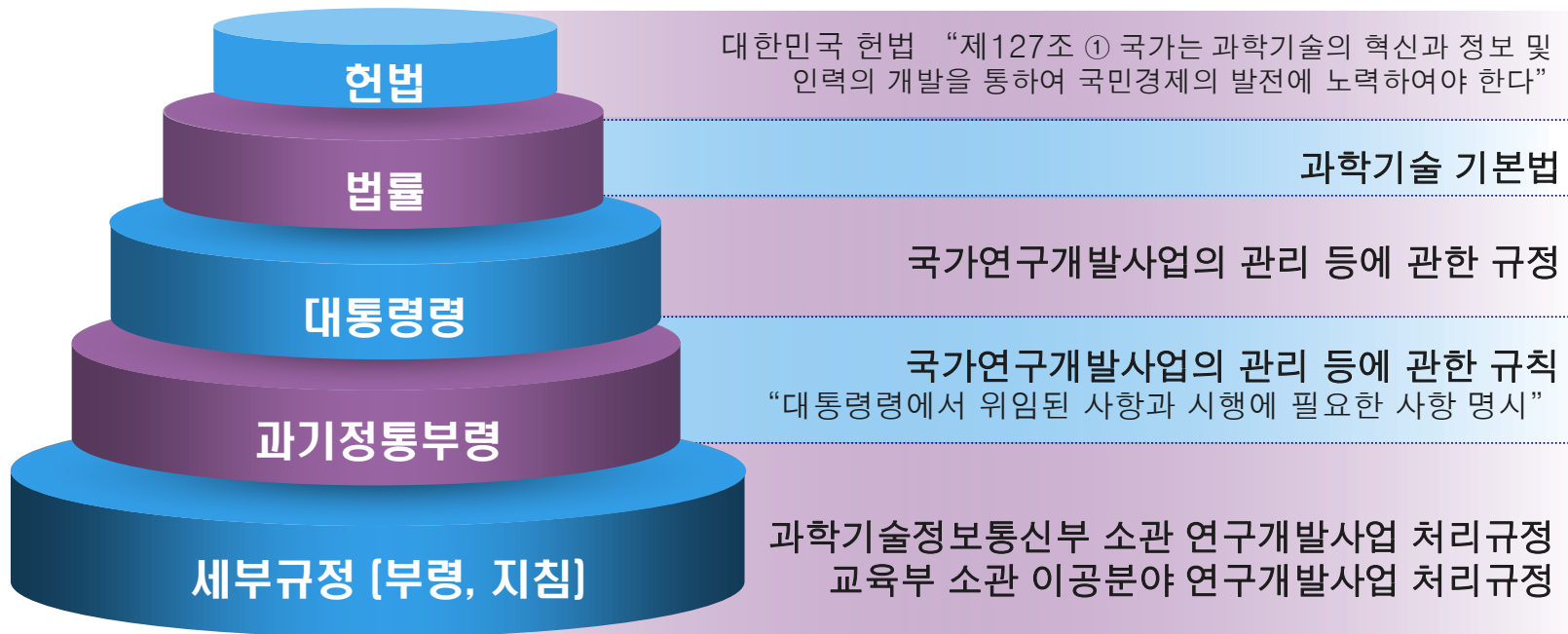


* 2018년 예산안(기획재정부)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2 정의 및 법령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 제2조)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3 부처별 세부규정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계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4 과학기술분야 관련 규정 및 지침(과기부&교육부)

규 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7.26. 이하 “공동관리규정”)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9.5)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6.11.8)

지 침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2017.11.13)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연구재단, 2017.10)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비 또한 주관하여 관리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구분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함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 **계속 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2년 이상)로 구분
-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 과제 중 매 연차 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 **다년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 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 협약 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 연구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I.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용어

•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연구비 환수 및 연구과제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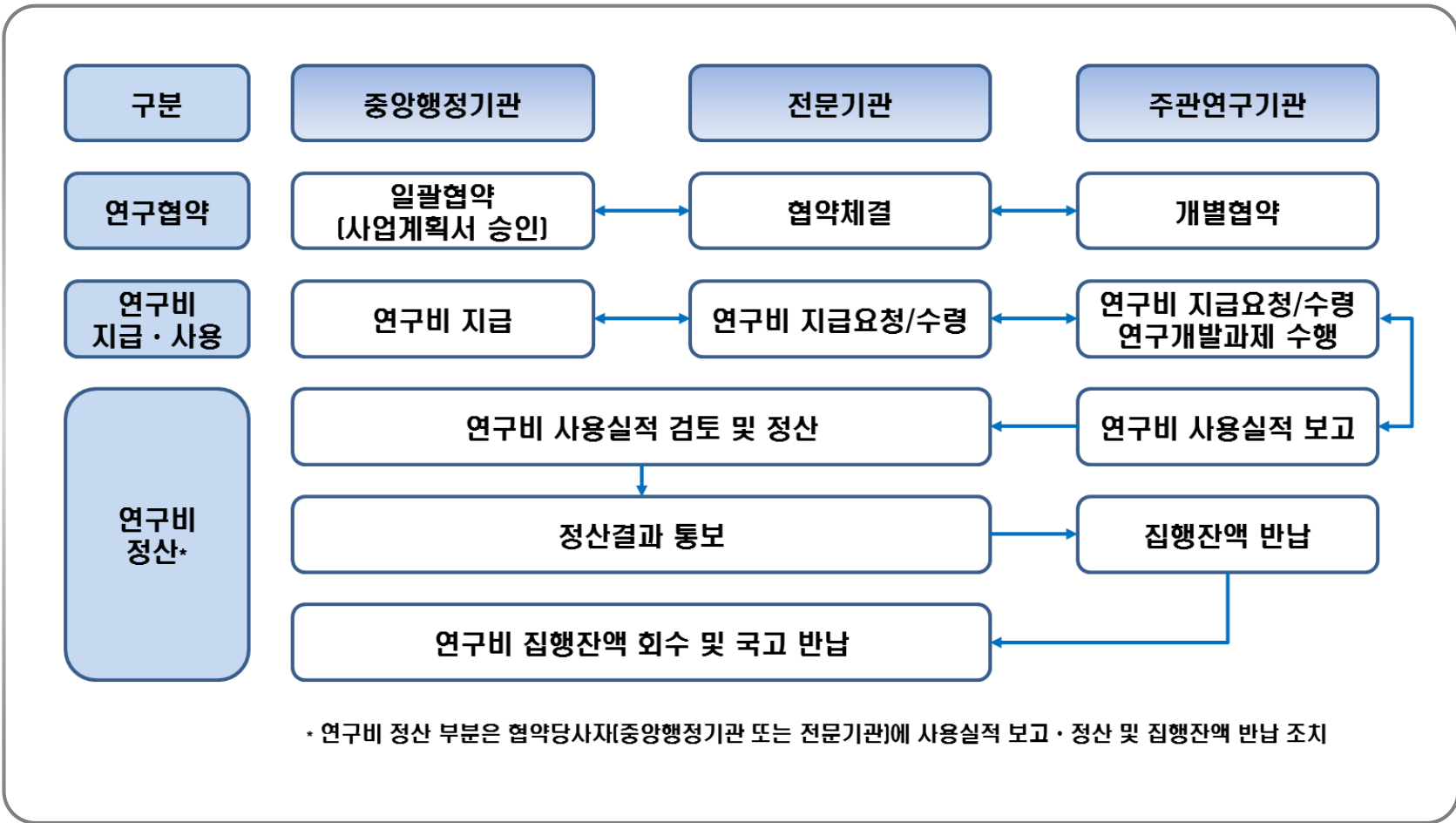
-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 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비 일반사항

II. 연구비 일반사항

1 연구비 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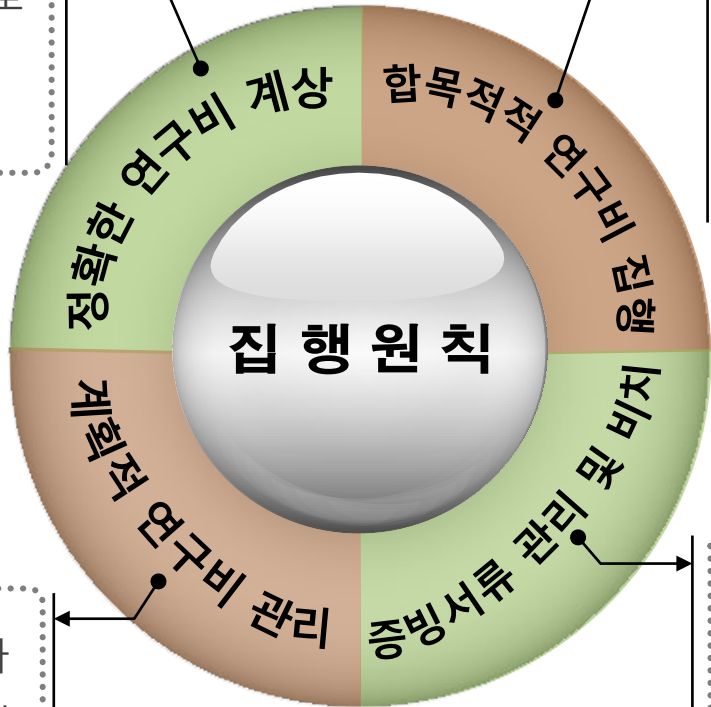


II. 연구비 일반사항

2 연구비 집행 주요원칙

○ 연구비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원칙 준수

-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 책정금액 환수 조치



- 연구비는 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 연구비는 연구과제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불가

-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

-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하며,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 · 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Ⅱ. 연구비 일반사항

4 연구개발비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 변경 시 전문기관 보고사항 및 승인사항

구 분	변경내용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미지급 인건비제외)를 당초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로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음)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단,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다년도 협약 체결 시 승인 불필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시

Ⅱ. 연구비 일반사항

5 연구비 비목구성

비목	세 목	세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등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 지원금,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경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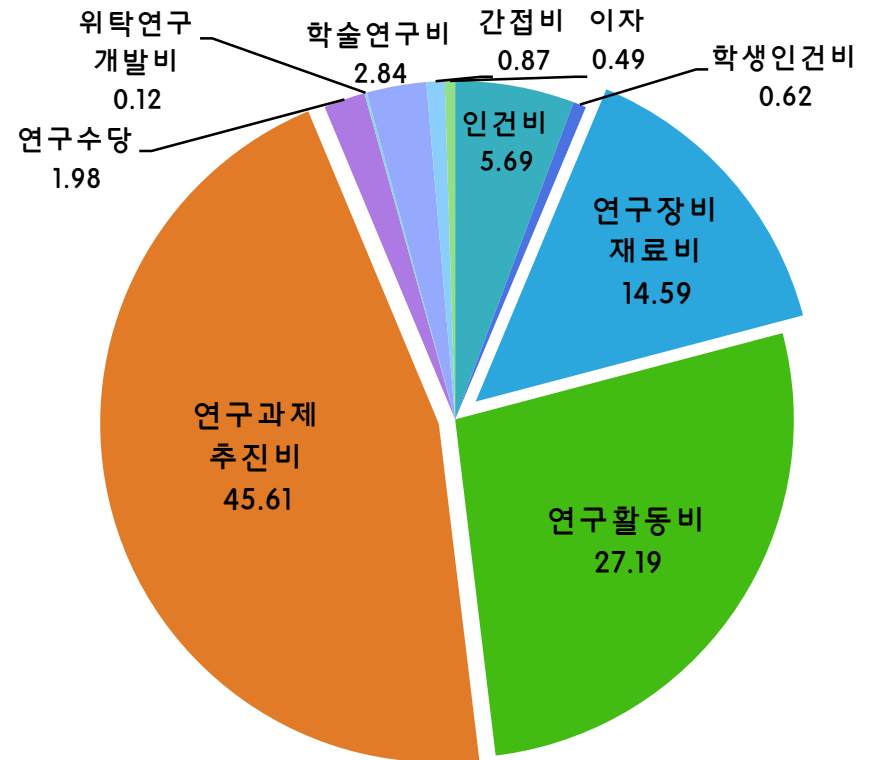
연구비 계상 및 집행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1 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

(건수) 최근 3년간('15년~'17년까지 정밀정산 지적현황)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809건의 분석결과,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장비재료비의 부적정 집행건수가 많음

구분	건수	비율
인건비	46	5.69%
학생인건비	5	0.62%
연구장비재료비	118	14.59%
연구활동비	220	27.19%
학술연구비	23	2.84%
연구과제추진비	369	45.61%
연구수당	16	1.98%
위탁연구개발비	1	0.12%
이자	4	0.49%
간접비	7	0.87%
합계	8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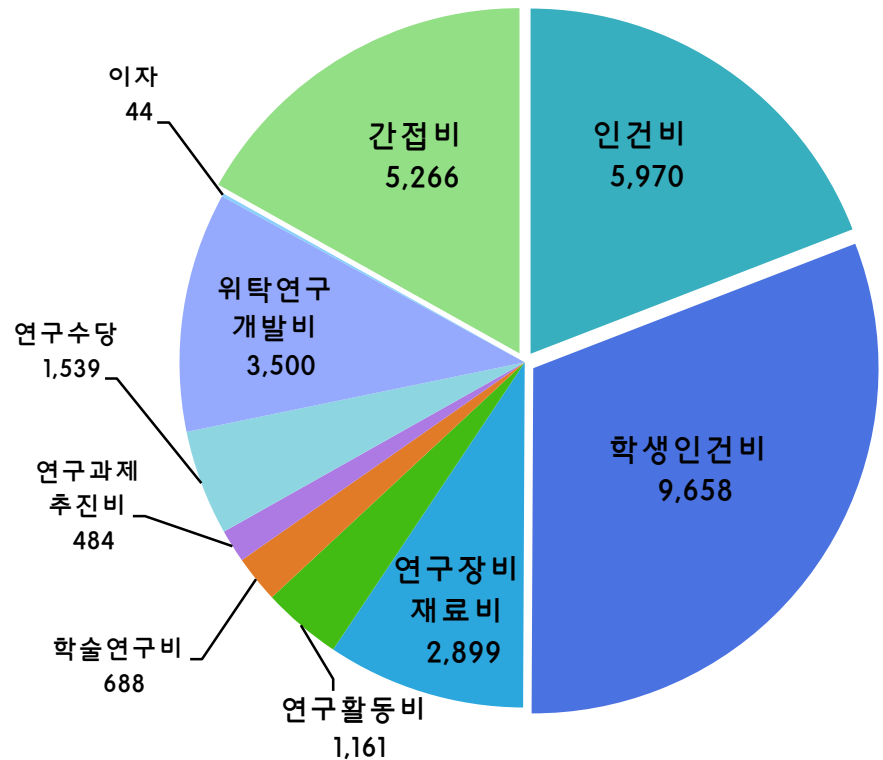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1 연구비 비목별 부적정 집행 현황

(평균금액) 최근 3년간('15년~'17년까지 정밀정산 지적현황)
 연구비 부적정 집행현황 809건의 분석결과,
 건당 회수금액은 학생인건비 → 인건비 → 간접비 순으로 많음

구분	평균금액(1건당)
인건비	5,970천원
학생인건비	9,658천원
연구장비재료비	2,899천원
연구활동비	1,161천원
학술연구비	688천원
연구과제추진비	484천원
연구수당	1,539천원
위탁연구개발비	3,500천원
이자	44천원
간접비	5,266천원
합계	31,209천원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1/2)

정의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상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총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2/2)

계 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은 인건비 계상 시 총 130% 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동비목 계산을 목적으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은 130%까지 지급용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나,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 불가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 참여율 최대한도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지급불가)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 계상
 - * 참여율 상한(30%)을 폐지하는 동시에 협약(부가조건)으로 연구수당 한도를 구체화하여 과다집행 등 부작용 방지(2018.3.30 개정)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참여 가능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인건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인건비 46건(5.69%)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인건비 275백만원(23.28%)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인건비 관련 지적사례

사례 1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계획서에 과다계상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이미 퇴사하였으나,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한 경우



인건비 지급 관련 관련 서류 확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월 1,000,000원	월 1,800,000원	월 2,500,000원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학생인건비

계 상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 확인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 협약서 작성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학생인건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학생인건비 5건(0.62%)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학생인건비 48백만원(4.09%)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⑤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소속 창업학생연구원이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 시약·재료구입비·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계상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당 3천만원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비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범용성 장비는 원래계획서에 있는 경우만 인정)
 - 단,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인컴퓨터에 한해 자체규정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구매 가능

집행

- 연구장비·재료비는 주관연구기관의 구매·검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및 방법으로 집행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연구장비재료비 118건(14.59%)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연구장비재료비 342백만원(28.99%)

구분	부당집행 기준
<p>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동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 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p>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 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 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 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 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p>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p>	<p>⑪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p> <p>⑫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p>
<p>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p>	<p>⑬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p>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 지적사례

사례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에는 토너, A4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서류로 제출하고 실제로는 컴퓨터, 프린터 등 범용성 장비를 납품 받아 사용한 경우



토너 등과 같은 소모성 재료 과다 구입한 결과, 납품업체의 거래원장을 입수하여 비교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 ※ 기관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은 불인정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논문게재료 등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지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전문가활용비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회의장 사용료,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은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
- 시험분석,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세부(단위)과제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 경비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활동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연구활동비 220건(27.19%)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연구활동비 255백만원(21.65%)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⑤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⑥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 요금 등 ⑦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 구입비 등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⑧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 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 분석을 의뢰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 (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p>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 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⑪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⑫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 ⑬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⑭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⑮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⑯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계획서에 반영 시 인정)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활동비 관련 지적사례 (국외여비)

사례 1

연구책임자 A 교수가 해외 출장지인 B 국가에 출장 후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단순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C 국가를 방문하면서 해외 출장비를 수령



과제와 무관한 해외출장경비 지급 불가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기관 기준에 따라 집행,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경비
 - 국공립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 ※ 기관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은 불인정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 비용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 비용

회의비 등

- 회의개최를 위한 준비비 및 다과비, 회의식대(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및 집행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외부 참석자 없는 평일 점심식대는 불인정)
- 기타 사무용품 등 소모성 경비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연구과제추진비 369건(45.61%)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연구과제추진비 178백만원(15.12%)

구분	부당집행 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 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④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집행한 금액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 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구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⑥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⑧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 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⑨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⑩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식대로 집행된 금액 ⑪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⑫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여비)

사례 1

연구책임자 A 교수가 이공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평가회의, 박사논문 심사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연구과제에서 여비를 집행



여비의 집행 목적이 연구과제와 무관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여비)

사례2

대학의 국내·외 출장 여비 규정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여비단가 기준을 이중으로 운영하면서 부당 집행한 국내·외 출장여비 지적 (감사원 감사 2016.11)



〈국내·외 출장여비 이중 기준의 대표 유형〉

① 산학협력단 규정 별도로 마련된 경우(2개의 규정)

- 산학협력단 여비 단가 기준을 본교 여비 단가 기준에 비해 높게 두는 등 과다 지급

② 본교 규정과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이 통합된 경우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직급별 여비 단가 기준을 차등하여 설정한 후 연구책임자라는 직급을 추가적으로 두어 정교수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비즈니스클래스 항공 및 상위 숙박비 등)
- 외부 “project” 의 경우 여비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자가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 후 청구 시 실비 지급

③ 연구비 관리 지침만 있는 경우

- 연구비관리지침만 있고 본교의 공무상 출장 여비기준 자체가 없이 해당 경비는 실비정산(지침에 따라 조교 등 연구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비즈니스 등급 이용)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회의비)

사례 1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맹점은 일반음식점이나 실제 장소는 와인바, 호프집,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연구비를 집행



음식점 상호와 로드뷰를 통해 실질 확인 가능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지적사례 (회의비)

사례2

타기관 소속 연구자(주로 선후배 관계)를 회의 참석 한 것으로 회의록에 허위 기재하여 회의비 집행



원소속기관 복무사항 실질 확인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수당

정 의

- 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

계 상

- 인건비(미지급포함)+학생인건비의 20%범위 내에서 산정

집 행

- 참여연구원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원 계좌로 이체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수당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연구수당 16건(1.98%)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연구수당 25백만원(2.09%)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 연구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합의 40%이내
* 인건비는 지급용 인건비만 포함(미지급인건비 제외)
본 과제와 동일하게 모든 비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산정 가능

집행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함
- 당초 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 위탁과제를 신설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 정산은 위탁연구기관에서 본 과제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제출, 본 과제 정산보고 시 위탁과제 포함 제출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위탁연구개발비 1건(0.12%)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위탁연구개발비 3.5백만원(0.30%)

구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1/2)

정의

●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지원비

계상

●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한 간접비율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비 제외))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비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2/2)

집행

-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
- 대학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협약 당시 간접비 금액 대비 증액 불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년도 기관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지급가능
- 기술창업 출연 및 출자금 해당년도 기관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설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

Ⅲ. 연구비 계상 및 집행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2/2)

2015~2017 부적정 건수 총 809건 중 간접비 7건(0.87%)

2015~2017 부적정 금액 총 1,180백만원 중 간접비 37백만원(3.12%)

간접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까지 계상 사용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IV 제재조치(참여제한 및 환수)

IV. 제재조치 및 환수

1 제재조치 유형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제한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별표 4의2)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 기간	근거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IV. 제재조치 및 환수

참여제한 사유		1회	2회	3회 이상	근거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	3년	4년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6년 이내	4.6년 초과 ~6년 이내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6년 이내	7.6년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6년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6년 이내	4.6년 초과 ~6년 이내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IV. 제재조치 및 환수

2 제재조치 유형별 현황(2012년~2017년 기준)

부처	제재 사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과기부	연구결과 불량	2	-	-	3	-	4	9
	연구수행 포기	-	-	-	5	2	17	24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0	4	2	6	25	17	64
	연구부정행위	-	3	-	1	-	5	9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	2	-	-	4	4
	소계	12	7	4	15	27	47	111
교육부	연구결과 불량	70	20	38	1	123	1	252
	연구수행 포기	-	1	-	2	1	-	4
	연구비 용도 외 사용	6	6	2	4	37	26	81
	연구부정행위	-	-	1	-	3	6	10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	1	-	-	3	1	6
	소계	77	28	41	7	167	34	353
합계		89	35	45	22	194	81	464

IV. 제재조치 및 환수

3 부당집행 기준

부당집행 기준

-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IV. 제재조치 및 환수

부당집행 기준

-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 금액
- ⑨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IV. 제재조치 및 환수

4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2015.12.22 개정)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IV. 제재조치 및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가중 기준(1/2 범위내)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부과 감경 기준(1/2 범위내)

-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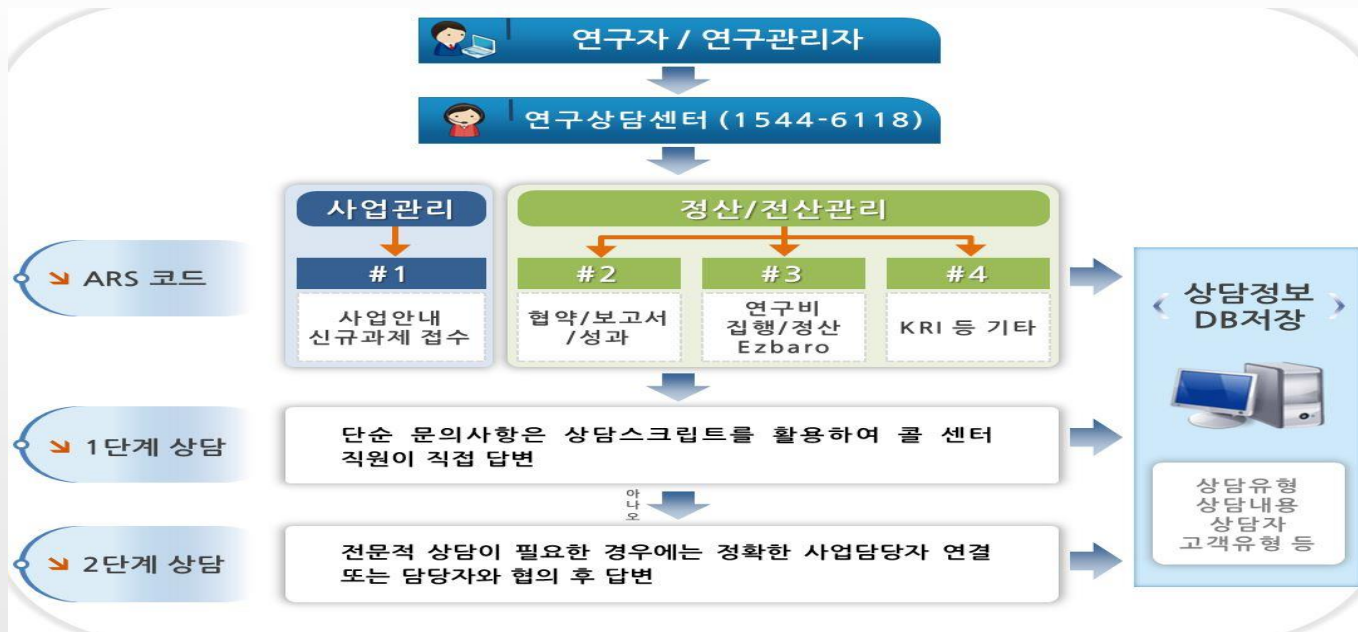
기타 참고사항

V. 기타 참고사항

1 연구상담센터 운영

○ 연구상담센터 통합운영

- 기존의 정산안내와 전산안내를 통합하고, 사업안내 부분까지 확대하여 “연구상담센터” 를 정산실에서 통합 운영(2017.1.1.운영개시)



V. 기타 참고사항

○ 연구상담센터 업무 범위

-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관리 업무, 사업비 정산 업무, 전산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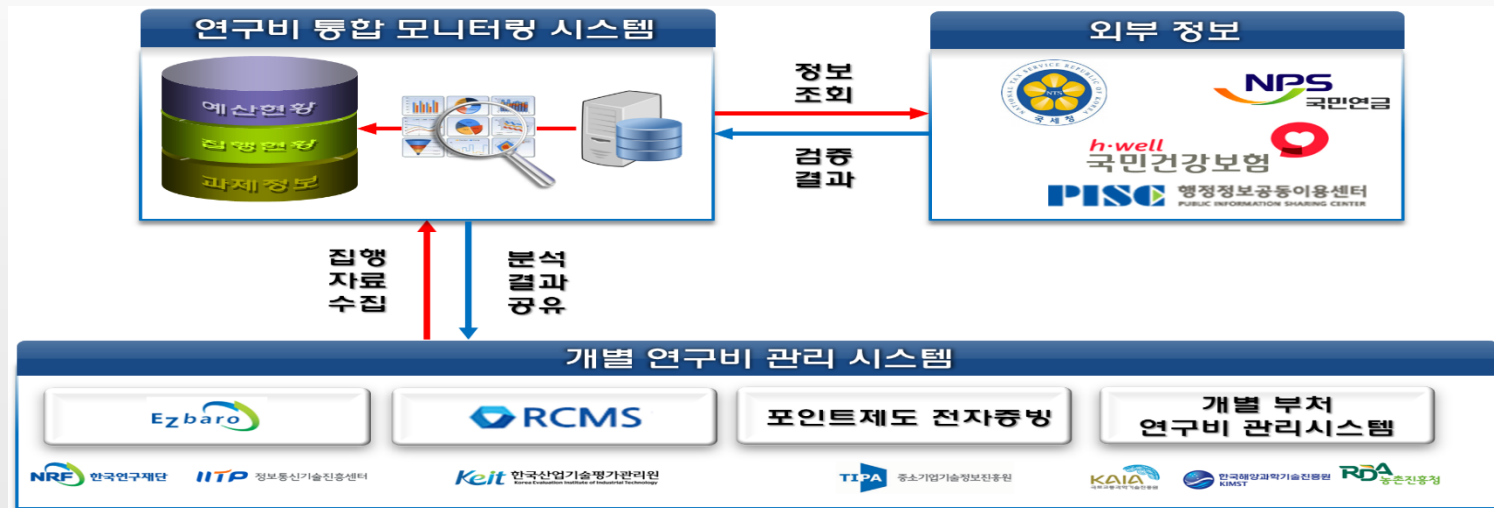
구분	업무범위	비고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 협약체결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on-line)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관리 사항 등 	
사업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 및 정밀정산 업무 보조 ◇ Ezbaro시스템 및 연구비 카드 관련 상담 등 	
전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nd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KRI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전산시스템 관련 상담 등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접수 및 정밀정산 업무 보조 	

V. 기타 참고사항

2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7년)

○ 범부처 연구비집행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비 집행부분에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부정 집행 사례 지속 발생
-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V. 기타 참고사항

3 범부처 연구비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18년)

- 17개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예방 및 정부R&D 연구비 집행 통계·지표생산 등의 기능을 구현(연구비관리 시스템 단일화 추진)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확정(2017.6.26)
- '18년 까지 17개 시스템을 2개로(과기부 Ezbaro, 산업부 RCMS) 통합하고, 단일화는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
 - 각부처 및 연구현장의 편리성 및 부처의 수용성 등을 최대한 고려
- 연구비 집행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Ezbaro 및 RCMS에 반영
-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17),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비 집행 정보를 표준화 및 연계 ('18)
 -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예방,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통계를 생산

정직한 연구의 첫 걸음!

연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감사합니다